■ 민족문화연구 제86호(2020.02.2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75-104.
http://doi.org/10.17948/kcs.2020..86.75

【특집: 조선시대 가례 연구의 축적과 활용】

「喪服商」에 나타난 髽의 형태에 대한 고찰

차서연(車瑞娟)*

목 차

1. 머리말
2. 古禮書에 나타난 髽의 형태
3. 『家禮』와 조선 유학자들의 髽
4. 다산이 제시한 髽의 형태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부인이 喪禮에서 하는 首飾인 髽에 대한 茶山의 해석을 고찰하고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산은 髽를 남자의 喪冠에 대응하는 요소로 간주한다. 남자가 喪冠을 쓰지 않을 수 없듯 부인이 髽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儀禮』와 『家禮』를 세밀하게 고찰하여 髽의 고증과 복원에 힘썼다.

다산은 남자와 견주어 가벼움을 따르는 것이 부인의 상복을 제정하는 원칙이라고 천명한다. 남자가 삼으로 만든 머리끈만으로 括髮을 하는 데 비해, 부인이 베로 만든 머리끈과 비녀를 사용하여 髽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원칙 때문이다. 삼보다 덜 거친 베와 남자에게 없는 비녀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조금 더 문식하고 가벼움을 따르는 것이다.

다산은 『家禮』의 규정을 존숭하면서 고례인 『儀禮』와 주소에 대한 비판적 고증을

* 단국대 전통의상학과 박사수료.

통해 髽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髽는 머리카락[髟]과 주저앉음[坐]으로 구성된 글자의 형태에서 알 수 있듯, 난쟁이[矬]거나 앉거나[坐], 또는 작은[小] 髻의 형태이다. 베로 만든 머리끈[布總]을 사용하여 髻를 만들고 이를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비녀[笄]를 꽂을 뿐이다. 齊衰의 髽라면 둘레 8촌이고 높이 6촌 남짓이며 斬衰는 齊衰보다 낮고 작게 만들면 된다고 고증하였다.

부인의 喪禮 首飾인 髽에 대한 엄밀한 고증을 통해 그 구체적 치수까지 포함한 제도를 밝힌 것은 다산이 유일하다. 표면적으로는 부인이 상례에 하는 수식을 법도에 맞도록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 내면에는 상례에서 부인이 의식의 주체적인 수행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음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제어: 좌, 상복, 상례, 상례사전, 가례, 의례.

1. 머리말

喪禮는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의식이다.[1] 죽은 사람 모시기를 살아 있는 사람 모시듯 하고,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살아 있는 사람 섬기듯이 하며, 떠나간 사람 섬기기를 존재하는 사람 섬기듯이 해야 하므로[2] 다른 禮에 비하여 복잡하지만, 조선에서는 喪禮를 잘 이행하는 것을 孝의 지극함으로 여겼다.

喪이 발생하면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두 층위에서 의식이 진행된다. 죽은 사람의 경우, 사망한 당일 시신을 목욕시키고 입에 飯含을 한 후 시신에게 옷을 입히는 襲을 진행한다. 이틀째 되는 날과 사흘째 되는 날에는 시신을 감싸고 이불로 덮어 묶음 베[絞]로 묶는 小斂과 大斂을 한 뒤 납관을 하거나 成殯을 한다.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고례를 중심으로는, 당일 冠을 벗고 맨발을 하며 이틀째에는 주인은 머리를 풀었다[被髮] 삼으로 묶은[括髮] 뒤 素弁을 쓰고 중주인은 免을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는 소변 위에 首絰[環絰]을 두르고, 나흘째 되는 날에는 衰服을 입고 喪冠을 쓰는 成服을 진행한다. 『가례』에는 사망 당일 머리를 풀고 소렴 때 이르러 括髮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3]

---

1) 『說文解字注』 卷12下 亡部. "〈亡〉 段注 : '逃也, 亡非死之謂也.'"
2) 『中庸』 第19. "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 孝之至也."
3) 다산은 소렴에 비로소 머리를 풀고 머리를 묶는 고례와 사망 당일에 머리를 풀었다가 소렴에 다시 묶는 『가례』의 의식절차에는 상징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전자에는 다시 소생할 수도 있

고례와『가례』그리고『가례』를 따른 조선에서의 머리를 푸는 시점과 그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소렴을 마친 뒤 머리를 묶거나 髽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소렴은 부패 등으로 변동하는 시신을 문식하는 상례의 일반 원칙에 따른 의절이다. 문식하지 않으면 혐오하게 되고 혐오하면 슬퍼하지 않게 되므로, 문식을 가하여 시신의 변동으로 인한 혐오감을 없애려는 것이다.[4] 시신의 변동이 슬픔조차 사라지게 하는 상황을 막고 조문객의 혐오 반응으로 상복을 입는 친족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서[5] 풀었던 머리를 묶고 상복을 입을 준비를 하게 된다. 소렴을 막 마치면 남자는 括髮을 하고 부인은 髽를 한다.

茶山 丁若鏞(1762-1836)은 유배 생활동안 상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喪禮四箋』을 저술하였다. 그중 한 편인「喪服商」에서는 喪服으로 대표되는 상례 복식 전반의 제도와 형태만을 독립적으로 고찰하였다. 조선 유학자들의 대부분이 상례의 의절을 설명하면서 소용되는 물품과 복식 등을 함께 서술한 반면, 다산은「상복상」에서 상례에 착용하는 복식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부인이 소렴 때부터 하는 首飾인 髽에 대한 다산의 해석을「상복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산은 부인의 髽를 남자의 喪冠에 대응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부인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 형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상복의 경학적 근거가 되는『儀禮』에 기록된 髽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조선에 시행된 상복 제도의 준거인『家禮』의 髽에 대한 규정과 조선 유학자들의 대표적인『가례』주석서에 나타난 髽의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상복상」에서 다산이 제시한 髽의 형태를 구명하고

다는 희망으로 억제되었던 슬픔이 소렴을 기점으로 폭발하여 머리를 풀었다 묶어 凶禮가 시작되었음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후자에는 사망 당일 슬픔이 극대화되어 머리를 풀었다가 그것이 조금 완화되어 머리를 묶는, 즉 吉로 조금씩 나아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喪儀節要』小斂. "陳絰帶于堂東.【括髮, 唯親子爲之. 其法用麻繩束髮, 以爲髻, 不作髻也.[古禮小斂始解髻, 爲括髮, 此凶服之始也. 今俗先披髮, 至小斂而括髮, 有漸吉之象也. 古今之禮大不同.]】"

4)『荀子』卷13 禮論. "喪禮之凡, 變而飾, 不飾則惡, 惡則不哀, 尒則翫, 翫則厭, 厭則忘, 忘則不敬. (…) 君子恥之, 故變而飾, 所以滅惡也. 動而遠, 所以遂敬也.【遂, 成也. 邇則懼, 敬不成也.】久而平, 所以優生也.【優生, 養生也. 謂送死有禮, 復生有節也.】"

5) 장동우,「茶山『喪儀節要』의 淵源과 再成文化의 原則」,『韓國實學研究』제30집, 韓國實學學會, 2015, 39-40면.

그림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初終과 관련된 복식[6]과 斂襲衣,[7] 상복에 관한 연구[8]는 진행되었지만, 소렴에 하는 부인의 머리 모양인 髽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고 그림이 없어 명확한 형태를 알기 어려웠던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古禮書에 나타난 髽의 형태

『左傳』에서는 臧紇이 狐駘에서 패배하자 나라 사람들 가운데 喪을 만난 자는 모두 髽를 하여 노나라는 이로부터 髽를 喪禮에 착용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9] 「檀弓」에서도 "노나라 부인이 髽를 하고 조문을 하는 것이 臺駘의 전투에서 시작되었다"[10]라고 하였다. 髽에 대해 鄭衆(?-83)과 杜預(223-284)는 숫마[枲麻]와 머리카락을 반씩 섞어 묶는 것이라 하였고, 馬融(79-166)은 베를 접어 만든 높이 4촌의 巾을 쓰는 것으로 보았다.[11] 髽의 형태와 제도는

---

6) 최규순, 「傳統 喪禮에서의 復과 復衣에 나타난 多面的 성격」, 『한국학논총』 제34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0; 최규순, 「전통상례 중 복(復)과 복의(復衣)의 조선적(朝鮮的) 변용(變容)」, 『比較民俗學』 제42집, 比較民俗學會, 2010.

7) 成耆姬, 「殮襲考」, 『關大論文集』 제8권 1호, 관동대, 1980; 송미경, 「염습의(斂襲衣)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1990; 장인우・이춘계, 「15-17세기 禮書에 나타난 殮襲衣와 그 意味」, 『服飾』 제25권, 한국복식학회, 1995; 張美善, 「喪禮儀式과 襲服에 關한 考察—朝鮮時代 國喪과 庶人喪을 中心으로—」,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99; 순남숙, 「茶山의 斂襲衣 制度에 관한 硏究—喪具訂을 中心으로」,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2000; 김진아, 「전통수의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1; 정말숙, 「조선시대 王의 斂襲衣襨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5; 김희선, 「조선시대 왕세자 염습의대 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2017.

8) 鄭明子, 「五服制度에 關한 硏究—朝鮮王朝의 國恤服制를 中心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75; 趙又玄, 「朝鮮時代 喪服에 關한 硏究」,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0; 趙又玄, 「儒敎喪服의 조직원리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18권 4호, 한국의류학회, 1994; 문광희, 「한국의 喪禮服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제2권 3호, 한복문화학회, 1999; 김장향・은영자, 「전통 상복의 복제(服制) 및 종류에 관한 연구」, 『科學論集』 제32집, 계명대 생활과학연구소, 2006; 이영주, 「조선시대 국상 시 오복제도에 관한 연구(제1보)—여자 복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32권 10호, 한국의류학회, 2008; 이영주, 「조선시대 國喪 服制 연구」, 동덕여대 박사학위논문, 2009; 한상일, 「喪服의 構成과 喪期에 관한 硏究」,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 공병석, 「先秦儒家의 喪服制度—『禮記』를 중심으로—」, 『東洋禮學』 제30권, 東洋禮學會, 2013.

9) 『春秋左傳注疏』 卷29 襄公四年. "傳 : '冬十月, 邾人莒人伐鄫, 臧紇救鄫侵邾, 敗于狐駘, 國人逆喪者皆髽, 魯於是乎始髽.'"

10) 『禮記注疏』 卷6 檀弓上, 219면. "魯婦人之髽而弔也, 自敗於狐鮐始也."

학자마다 이견이 있었지만, 『儀禮』에 대한 주에서 鄭玄(127-200)[12]이 머리싸개[纚][13]를 제거하고 大紒를 만드는 것을 髽라고 보는 해석이 정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經① : 부인은 室 안에서 髽를 한다.[14]
經② : 처가 남편을 위해, 첩이 군을 위해, 시집가지 않은 딸이 아버지를 위해 베로 만든 머리끈을 하고, 대나무 비녀를 꽂으며, 髽를 하고, 상복을 3년동안 입는다.[15]
經③ : 시집간 딸이 친부모를 위해, 며느리가 시부모를 위해서는 머리 장식이 있는 惡笄로 髽를 한다. 傳에서 말하였다. "'비녀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惡笄에 머리가 있다는 뜻이다. 악계는 櫛笄이다."[16]

經①은 소렴을 막 마친 뒤의 상황이고, 經②와 經③는 성복 때의 상황이다. 經①에 대해 정현은 우선 막 사망하면 부인으로 斬衰服을 입을 사람은 비녀[笄]를 제거하고 머리싸개[纚]를 하며, 齊衰服[17]을 입을 사람은 뼈로 만든 비녀[骨笄]를 하고 머리싸개[纚]를 한다고 전제한 뒤, 소렴을 막 마친 상황에서는 머리싸개마저 제거하고 大紒를 만든다고 하였다. 이때의 髽는 大紒로, 당시 부인들이 하던 露紒와 같은 머리모양이라고도 덧붙였다.[18]

---

11) 『春秋左傳注疏』 卷29 襄公四年. "孔疏 : '鄭衆以爲枲麻與髮, 相半結之. 馬融以爲屈布爲巾, 高四寸, 著於顙. 鄭玄以爲去纚而紒. (…) 杜以鄭衆爲長, 故用其說言麻髮合結, 亦當麻髮半也. 於時魯師大敗, 遭喪者多, 婦人迎子迎夫, 不能備其凶服, 唯髽而已.'"
12) 이하 『의례』에 대한 번역은 정현과 가공언의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진행하였으므로, 본 논문에서 '고례'라고 규정한 내용은 두 사람의 해석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해석은 고례인 『의례』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으로 인정되었고 그 해석을 비판하며 『의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장한 사람이 다산이므로 본 논문에서 채택한 방식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13) 머리카락을 싸서 묶어주는 것으로, 너비는 온폭이고 길이는 6척이다. 『儀禮注疏』 卷1 士冠禮. "鄭注 : '纚, 今之幘梁也. (…) 纚一幅, 長六尺, 足以韜髮而結之矣.'"
14) 『儀禮注疏』 卷36 士喪禮, 799-800면. "婦人髽于室."
15) 『儀禮注疏』 卷29 喪服, 642-644면. "〈斬衰三年章〉 '妻爲夫, 妾爲君, 女子子在室爲父. 布總, 箭笄, 髽, 衰, 三年.'"
16) 『儀禮注疏』 卷34 喪服·記」, 747-748면. "女子子適人者爲其父母·婦爲舅姑, 惡笄有首以髽. 傳曰 : '笄有首者, 惡笄之有首也. 惡笄者, 櫛笄也.'"
17) 정약용은 齊를 '자'로 읽지 말고 본래의 발음으로 읽도록 하였으므로, 제최로 읽었다. 『喪禮四箋』 卷8 喪服商1. "〈名義〉. '今以齊縗之齊, 讀之如齎, 則齊衰之服, 只緝其裳, 不緝其衣乎? (…) 宜如字讀.'"
18) 『儀禮注疏』 卷36 士喪禮, 799-800면. "鄭注 : '始死, 婦人將斬衰者, 去笄而纚, 將齊衰者, 骨笄而纚.

經②에 대해서는 髽가 남자의 括髮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참최의 경우 남자가 삼[麻]을 사용하므로 髽 역시 삼을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髽에 사용하는 머리끈은 남자의 括髮과 소재가 같고, 삼을 사용한다면 뒷덜미에서 앞으로 둘러 이마 위에서 교차시키고 다시 뒤로 감아 紒에 묶어 幓頭[19]를 착용한 듯이 한다고 髽의 형태를 설명하였다.[20] 經③에 대해서는 髽에 비녀를 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문장이라고 하였다.[21] 經①과 經②, ③에서의 차이는 비녀의 사용 여부뿐이다. 정현에 따르면, 소렴의 髽는 비녀와 머리싸개[纚]를 제거하고 大紒(露紒)를 묶는 것으로, 처와 첩과 딸 등 부인이 하는 머리 모양이다. 성복의 髽는 露紒에 비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렴의 髽와 차이가 있다.

賈公彥(唐?-?)은 제최 이상은 소렴에 성복을 하기 전의 髽를 하고, 대렴과 殯을 한 뒤에야 성복의 髽를 하는데,[22] 성복의 髽는 참최부터 緦麻에 이르기까지 모두 紒를 드러내는 露紒라고 하여 정현의 해석을 보충하였다.[23] 가공언

今言髽者, 亦去笄纚而紒也. 齊衰以上, 至笄猶髽. 髽之異於髻發者, 旣去纚而以髮爲大紒, 如今婦人露紒, 其象也.'"

19) 머리끈으로 이마를 두르고, 다시 묶은 머리를 두른 형태로 아래 그림과 유사하다. 최연우, 「진한에서 위진남북조시대의 복식」, 『도용: 매혹의 자태와 비색의 아름다움』, 유금와당박물관, 2009, 25면, 118면.



漢代 幓頭와 유사한 형태. 같은 책, 26면, 41면.

20) 『儀禮注疏』 卷29 喪服, 644-645면. "〈斬衰三年章〉 鄭注 : '髽, 露紒也. 猶男子之括髮. 斬衰括髮以麻, 則髽亦用麻. 以麻者自項而前, 交於額上, 卻繞紒, 如著幓頭焉.'"

21) 『儀禮注疏』 卷34 喪服・記, 747-748면. "鄭注 : '言以髽, 則髽有著笄者, 明矣.'"

22) 가공언은 정현의 말을 따르기 위해(각주 23) 참조) "성복에 비녀를 할 때에 이르러서도 소렴의 좌를 고치지 않다가 대렴과 빈을 한 이후에 성복의 髽를 한다"고 해석하였는데, 다산은 초고를 고치지 못한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가공언의 말은 상례의 절차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결국 소렴의 髽와 성복의 髽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 '又按, 賈氏急於媚鄭, 乃以大斂謂在成服之後, 此必草稿未刪而徑就剞劂也.'"

23) 『儀禮注疏』 卷36 士喪禮, 799-800면. "賈疏 : '「今言髽者, 亦去笄纚而紒也」者, 謂今至小斂節, 亦如上將斬衰. (…) 齊衰以上, 至笄猶髽者, 謂從小斂著未成服之髽, 至成服之笄, 猶髽不改, 至大斂殯後, 乃著成服之髽代之也.'"

에 따르면, 髽는 시기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성복을 하기 전의 髽로, 위의 經①이 그에 해당한다. 이때 참최복을 입는 부인은 삼[麻髽]을 사용하고, 제최복을 입는 부인은 베[布髽]를 사용한다. 두 번째는 성복 때에 紒를 드러내는 형태의 髽[露紒]로, 위의 經②가 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가공언은 髽가 남자의 括髮과 제도가 같지만, 남자는 陽이므로 보이는 모양[外物]로 이름하고 부인은 陰이므로 내용물[內物]로 일컫는다고 덧붙였다.[24] 아울러 경③에서 髽와 비녀를 이어서 말한 이유가 성복의 髽는 비녀가 있기 때문이라는 정현을 입장을 수용하였다.[25] 가공언이 성복 이전의 髽를 삼으로 만든 髽 또는 베로 만든 髽로 구분한 것은 정현의 입장을 따른 것이지만 성복 이후의 髽를 비녀로 고정한 露紒로 규정한 것은 정현의 논의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정현은 經①과 經② 모두에서 髽를 露紒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렴이 막 끝나면 참최복을 입을 主人은 括髮을 하고 제최복을 입을 衆主人은 免을 하는데, 부인은 이때 髽를 한다.[26]

> 經 : 남자는 冠을 착용하고 부인은 笄를 하며, 남자는 免을 하고 부인은 髽를 한다. 그 뜻은 남자이면 免을 하고 부인이면 髽를 한다는 것이다.[27]

정현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짧게 언급하지만, 孔穎達(574-648)은 위의 문장이 남자와 부인에게 冠과 비녀[笄], 免과 髽가 상대되는 절목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吉時에 남녀는 冠과 비녀라는 수식의 차이가 존

---

24) 『儀禮注疏』 卷29 喪服, 644-645면. "〈斬衰三年章〉 賈疏 : '二種者, 一是未成服之髽, 卽「士喪禮」所云者是也, 將斬衰者用麻, 將齊衰者用布, 二者成服之後露紒之髽, 卽此經注是也. (…) 但男子陽, 以外物爲名, 名爲括髮, 婦人陰, 以內物爲稱, 稱爲髽, 爲異耳. (…) 若然成服以後, 斬衰至緦麻, 皆冠如著幓頭, 婦人皆露紒而髽也.'"

25) 『儀禮注疏』 卷34 喪服・記, 747-748면. "賈疏 : '鄭言此者, 舊有人解「喪服小記」云'男子免而婦人髽', 免時無笄, 則髽亦無笄矣. 但免・髽自相對, 不得以婦人與男子有笄無笄相對, 故鄭以經云'惡笄'有首以髽, 髽笄連言, 則髽有著笄明矣.'"

26) 남자들은 소렴에 免을 하고 성복에 喪冠을 썼다가 계빈을 하기 직전에 免을 하고, 부인들은 소렴에 髽를 하고 성복에 비녀를 사용한 髽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儀禮注疏』 卷36 士喪禮, 799면. "主人括髮・袒, 衆主人免于房. 婦人髽于室."; 『儀禮注疏』 卷38 旣夕・記, 836면. "丈夫髽, 散帶垂, 卽位如初."

27) 『禮記注疏』 卷32 喪服小記, 1113면. "男子冠而婦人笄, 男子免而婦人髽. 其義, 爲男子則免, 爲婦人則髽."

재한다. 그에 따라 부모가 막 사망하면 남자는 冠을 벗고 여자는 비녀를 제거하며, 성복에 남자는 父喪이라면 6승의 베로 만든 冠을 쓰고, 母喪이라면 7승의 베로 만든 冠을 쓴다. 여자는 父喪이라면 대나무로 만든 비녀를 하고, 母喪이라면 개암나무로 만든 비녀를 한다. 제최의 상은 수식에 차이를 두므로 襲斂의 절차에서 남자가 免을 착용할 때 부인은 髽를 한다는 것이다.[28] 대머리인 부인은 머리카락이 없어 髽를 하지 않는 것과 대머리인 남자가 免을 하지 않는 것도 免과 髽를 상대되는 절목으로 본 증거로 제시한다.[29]

免과 髽의 차이는 남자의 免은 오직 한 종류인데 부인의 髽는 3가지라고 皇甫侃은 말하였다.[30] 그 첫 번째는 삼으로 만든 髽로, 남자가 括髮을 할 때 맞춰서 한다. 두 번째는 베로 만든 髽로, 남자가 免을 할 때 맞춰서 한다. 남자가 免에 베를 사용하므로 부인도 베로 만든 髽를 한다. 세 번째는 露紒로, 3년상 동안 남자가 항상 免을 하지는 않는 것처럼 부인 또한 베로 만든 髽 대신 露紒를 한다는 것이다.[31] 황보간은 소렴에 참최복을 입는 남자의 삼으로 하는 括髮과 부인의 삼으로 만든 髽, 제최복을 입는 남자의 베로 만든 免과 부인의 베로 만든 髽, 성복에 남자의 喪冠과 부인의 露紒 형태의 髽를 상대되는 것으로 보았다.

공영달은 황보간의 주장에 대해 髽는 2가지뿐이라고 반박하였다. 그 근거는 「상복소기」에 孔子가 南宮縚의 처에게 "시어머니의 상에 개암나무 비녀와 머리끈으로 髽를 하되 너무 높거나 넓게 하지 말라"고 가르친 기록이다.[32]

---

28) 『禮記注疏』 卷32 喪服小記, 1114-1116면. "鄭注 : '別男女也.' 孔疏 : '此明男子婦人冠笄髽免相對之節. (…) 若親始死, 男去冠, 女則去笄, 若成服爲父, 男則六升布爲冠, 女則箭篠爲笄. 爲母, 男則七升布爲冠, 女則榛木爲笄, 故云'男子冠而婦人笄'也. (…) 今遭齊衰之喪, 當襲斂之節, 男子著免, 婦人著髽, 故云'男子免而婦人髽免'者.'"

29) 『禮記注疏』 卷63 喪服四制, 1954면. "'禿者不髽.' 孔疏 : '禿者無髮, 故不髽也. 女禿不髽, 故男子禿, 亦不免也.'"

30) 황보간의 주장은 위에서 분석한 가공언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31) 『禮記注疏』 卷32 喪服小記, 1114-1116면. "孔疏 : '男子之免, 乃有兩時而惟一種. 婦人之髽, 則有三別. 其麻髽之形, 與括髮如一, 其著之以對男子括髮時也. (…) 是知男子爲母免時, 則婦人布髽也. 又若成服後, 男或對賓, 必踊免, 則婦人理自布髽對之. 知有露紒髽者, 「喪服・傳」云'布總・箭笄・髽・衰, 三年', 明知此服竝以三年, 三年之內, 男不恒免, 則婦人不用布髽, 故知恒露紒也. (…) 旣言髽衰三年, 益知恒髽是露紒也.'"

32) 『禮記注疏』 卷6 檀弓上, 221면. "'南宮縚之妻之姑之喪, 夫子誨之髽曰 : 「爾毋從從爾! 爾毋扈扈爾! 蓋榛以爲笄, 長尺, 而總八寸.」' 鄭注 : '誨, 教. 爾, 女也. 從從, 謂大高. 扈扈, 謂大廣. 爾, 語助. 總, 束髮,

부인이 개암나무 비녀로 髽를 하는 시점은 성복 때이다. 황보간은 성복에 露紵를 한다고 하였으나, 「상복소기」는 '너무 높거나 넓지도 않은 髽'라고만 밝히고 있어 露紵가 곧 髽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공영달은 참최의 삼으로 만든 髽와 제최의 베로 만든 髽 두 가지뿐이고, 모두 露紵의 형태이며, 대공 이하는 髽가 없다고 정리한다.[33] 「상복소기」의 주소에 나타난 소렴과 성복에 남녀의 수식 변화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상복소기」 정현과 공영달의 주소에 나타난 남자와 부인의 수식 변화

종류	小斂		成服	
	남자	부인	남자	부인
斬衰	括髮	麻髽(露紵)	布冠	麻髽+箭笄[34]
齊衰	免	布髽(露紵)	布冠	布髽+惡笄[35]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예기』「奔喪」에 "부인이 奔喪을 하여 도착하면 堂의 序 동쪽에서 髽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문은 부인이 분상을 하여 처음 도착한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그 때문에 '堂의 序 동쪽에서 髽를 한다'는 것은 성복 때의 髽가 아닌 소렴 때의 髽에 해당한다. 정현은 이에 대해 시집간 고모, 자매, 딸이 머리싸개[纚]을 제거하고 大紵를 만드는 髽를 한다고 해석하면서 삼으로 만드는 髽인지 베로 만드는 髽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영달은 부인이 돌아와 친부모 등을 위한다면 髽를 하는데 정현이 삼으로 만드는 髽인지 베로 만드는 髽인지를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제최 기년 이하는 삼이나 베의 구분이 없는 髽를 한다"고 보완하였다.[36] 이는 참최와 제최삼년의 경우에는 삼으로 만드는 髽와 베로 만드는

垂爲飾, 齊衰之總八寸.'"

33) 『禮記注疏』 卷32 喪服小記, 1114-1116면. "孔疏 : '案「檀弓」南宮紹之妻之姑之喪, 夫子誨之髽曰 : '爾無總總爾, 爾無扈扈爾.' 是但戒其高大, 不云有麻布別物, 是知露紵悉名髽也. (…) 此三髽之殊, 是皇氏之說. 今考校以爲止有二髽, 一是斬衰麻髽, 二是齊衰布髽, 皆名露紵. (…) 大功以下無髽也.'"

34) 참최의 상은 대나무 비녀로 상을 마치므로 성복의 髽에는 비녀가 있다. 『禮記注疏』 卷33 喪服小記, 1147면. "箭笄, 終喪三年."

35) 제최의 상은 惡笄 즉 개암나무 비녀를 하고 상을 마치므로, 성복의 髽에는 비녀가 있게 된다. 『禮記注疏』 卷32 喪服小記, 1113면. "齊衰, 惡笄・帶以終喪."

髽로 구분되지만, 기년 이하는 구분 없이 髽를 한다는 것으로서, 앞에서 공영달 스스로 "대공 이하는 髽가 없다"고 한 입장과 모순된다.

정리하면, 髽는 남자가 括髮과 免, 冠을 할 때 부인이 하는 머리모양이다. 고례의 주소는 소렴에서부터 髽를 하고 성복에는 髽에 비녀를 부가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소렴에는 髽만 언급하고, 성복에는 髽와 함께 비녀와 머리끈도 말했다. 경문에 공자가 크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정현은 大紕의 형태로 보았고, 가공언은 경문에서 髽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처와 첩과 딸과 며느리로 한정했음에도 대공 이하도 髽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공영달은 대공 이하는 髽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현의 말을 어길 수 없어 기년 이하는 삼이나 베로 구분하지 않는 髽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髽의 구성요소와 형태 및 착용자에 대한 논란을 남기게 되었다.

3. 『家禮』와 조선 유학자들의 髽

1) 『가례』의 髽

朱子(1130-1200)가 지은 『家禮』는 『의례』에 나타난 예의 근본을 따르되 간결하고 명료하면서도 당시의 세속에서 행해진 풍속과 『開元禮』 등의 국법을 반영하고 여러 사회 계층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일관된 원칙과 통일성을 갖추려고 한 저작이다.[37] 古禮는 時宜에 적합하지 못하고 나날이 번잡해져 모두 행할 수 없으므로 지금을 살아가면서 禮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한 주자는 고례를 고수하기보다 시의에 따라 예를 개정하자고 주장한다.[38] 부인의 髽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의례』와 『예기』의 주소는 시기와 복의 종류에 따라 髽를 구별하였지만, 주자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

36) 『禮記注疏』 卷56 奔喪, 1780면. "'婦人奔喪, (…) 東髽.' 鄭注 : '婦人, 謂姑・姊妹・女子子也. (…) 東髽, 髽於東序, 不髽於房, 變於在室者也. 去纚大紕曰'髽.'"; 『禮記注疏』 卷32 喪服小記, 1115-1117면. "孔疏 : '鄭云謂'姑・姊妹・女子子也. 去纚大紕曰髽', 若如鄭旨, 既謂是姑・姊妹・女子子等, 還爲本親父母等, 唯云去纚大紕, 不言布麻, 當知期以下無麻布也.'"

37) 장동우, 「朱子 禮學에서 『朱子家禮』의 位相과 企劃 意圖」, 『정신문화연구』 제23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10면.

38) 劉權鐘, 「茶山 禮學 硏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1, 70면.

本文 : 括髮할 삼, 免할 베, 髽를 할 삼을 갖춘다.
本注 : 삼으로 髻를 묶고 대나무나 나무로 비녀를 만든다.[39]

막 사망하면, 처・자식・며느리・첩은 모두 관과 높은 등급의 옷[上服]을 벗고 머리카락을 풀어헤치며,[40] 소렴에 삼을 사용하여 髻를 묶고 대나무나 나무로 비녀를 만들어 髽에 꽂는다. 「사상례」에는 소렴에 비녀와 머리싸개를 제거하고 삼으로 묶도록 하였지만, 『가례』는 상이 발생하자마자 머리를 풀었다가 소렴에 묶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례』의 연원인 司馬溫公(1019-1086)의 『書儀』도 대체로 『의례』를 따라 참최는 삼을 꼬아 끈을 만들고, 제최는 베나 絹을[41] 사용하는데, 모두 慘頭의 제도와 같이 만든다고 하였다.[42] 그러나 주자는 『의례』와 사마온공을 따르지 않고, 단지 髽를 만들고 비녀를 꽂는다고만 하였다. 『가례』는 소렴에서 머리를 묶고 비녀를 꽂은 髽의 형태를 설명하면서도, 성복에는 베로 만든 머리끈[布頭纚]과 대나무비녀[竹笄]만 기록함으로써[43] 성복에 비녀와 머리끈을 이용해서 새로운 머리 형태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소렴의 髽가 지속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주자가 말하는 髽의 형태는 부인들의 머리모양 중 머리카락을 높게 모아 올린 高髻에서 살펴볼 수 있다. 唐代에는 이러한 머리모양이 더욱 유행해 〈그림 1〉과 같이 자신의 머리카락뿐 아니라 가발을 이용하여 높고 크게 만들었고, 높게 올린 머리에는 비녀나 빗, 걸을 때 흔들리는 장신구인 步搖 등으로 장식하기도 하였다.[44] 宋의 부인들도 올린 머리를 했지만,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해 唐보다는 간단하고 소박하며 자연스럽게 올린 〈그림 2〉와 같은 형태였다.[45]

---

39) 『家禮』 卷4 喪禮. "〈小斂〉 '具括髮麻, 免布, 髽麻.' 本注 : '髽, 亦用麻繩撮髻, 竹木爲簪也.'"
40) 『家禮』 卷4 喪禮. "〈初終〉 '乃易服不食.' 本注 : '妻子婦妾皆去冠及上服被髮.'"
41) 『의례』를 따라 제최의 髽를 免에 상대되는 절목으로 인식하고 소재도 免을 따르지만, 絹은 『의례』를 따른 것이 아니다.
42) 司馬光, 『書儀』 卷5 喪儀1. "〈小斂〉 '今恐倉卒未能具冠絰, 故於小斂訖, 男子・婦人皆收髮爲髻, 先用麻繩撮髻, 又以布爲頭纚. 斬衰者括髮, 紐麻爲繩, 齊衰以下至同五世祖者, 皆免, 列布或縫絹廣寸. 婦人髽, 亦紐麻爲繩, 齊衰以下亦用布絹爲免, 皆如幓頭之制. 自項向前交于額上卻遶髻如著幓頭也.'"
43) 『家禮』 卷4 喪禮. "〈成服〉 本注 : '婦人則用極粗生布爲大袖長裙蓋頭, 皆不緝. 布頭纚, 竹笄, 麻屨.'"
44) 홍나영・신혜성・이은진, 『동아시아 복식의 역사』, ㈜교문사, 2011, 79-79면.
45) 高春明, 『中國服飾』,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2, 57면.

이러한 머리 형태는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元과 明까지 지속되었다. 주자가 말한 髻는 당시 송나라 부인들의 머리 모양의 하나로, 흉례이므로 삼으로 머리를 묶고 대나무나 나무로 만든 비녀를 꽂는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揮扇仕女圖〉


〈韓熙載夜宴圖〉

〈그림 1〉 唐 부인들의 高髻.[46]


〈哲宗昭慈聖王后象〉


〈女孝經圖〉

〈그림 2〉 宋 부인들의 髻.[47]





〈그림 3〉 元(左)과 明(右) 부인들의 髻.[48]

2) 조선 유학자들의 髽

『가례』는 고려말 신진사대부에 의해 전해져 17세기를 지나 예학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조선 예학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된다. 조선의 학자들은 예를 행하기 위해 『가례』를 해석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조선의 정서에 맞는 註를 보충하였고, 『가례』에 기록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은 變禮로 보충하면서 『가례』를 조선화하여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49] 특히 고례에 남자의 상복 끝에

46) 中國織繡服飾全集編纂委員會, 『中國織繡服飾全集 3』, 天津人民美術出版社, 2003, 302면, 376면.
47) 같은 책, 439면, 449면.
48) 유금와당박물관・동양복식연구회, 『아름다운 여인들』, 미술문화, 2016, 149면, 165면.

기록되었던 부인의 상복을 별도의 항목으로 만들어 부인의 상복을 상세히 고찰하고 실제로 제작하여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은 상이 발생하자마자 머리를 풀고 소렴에 髽를 하도록 제시한『가례』의 규정을 준수하였다. 申義慶(1557-1648)은 髽의 제도와 관련하여 삼끈[麻繩]과 머리끈[頭纚], 대나무 또는 나무비녀를 언급하였다. 참최를 하는 부인이 髽를 할 때 필요한 삼끈을 언급하면서는 慘頭의 형태로 설명하는『의례』를 따랐지만, 머리끈을 설명하는 곳에서는 조선의 부인들이 머리를 거두는 제도가 중국과 달라 모두 髽를 하지 않고 단지 머리카락을 정수리 위에서 교차시켜 직물[段] 한 조각으로 그 교차시킨 머리카락을 묶어 늘어뜨리며 대나무나 나무로 만든 비녀를 꽂는다고 하여 시속을 따르는 태도를 보였다.[50]

沙溪 金長生(1548-1631)의『喪禮備要』와『疑禮問解』에서는 참최는 삼끈을 이용하여 髽를 하고 齊衰 이하는 베나 絹을 사용하는데 모두 慘頭의 형태와 같게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고례에서는 대나무나 나무 비녀를 성복에 사용하였지만『가례』에서는 소렴에 사용하여 차이가 있음을 밝히면서 성복에 髽를 제거하는 것으로 보았다.[51] 사계는 성복에도 髽를 하고 비녀를 꽂는『의례』와 달리『가례』가 성복에 髽라고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머리끈[頭纚]과 비녀[簪]로 부인의 머리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髽를 소렴에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성복에 제거하도록 하였다.

鏡湖 李宜朝(1727-1805)의『家禮增解』에는「상복」의 주소를 정리한 다음 참최와 제최를 입는 사람이 모두 머리싸개를 제거하고 髽를 하는데, 齊衰만 베를 사용하여 髽를 한다고 하였다. "대공 이하는 髽가 없다."고 한 공영달의

49) 장동우,「『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과정」,『국학연구』제16집(별책),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0b, 184-185면;「『家禮』註釋書를 통해 본 朝鮮 禮學의 進退過程」,『東洋哲學』제34집, 韓國東洋哲學會, 2010a, 265-266면.

50) 申義慶,『喪禮通載』卷1 小斂・初終. "〈括髮・免・髽之具〉'麻繩【其長可以自項向前, 交於額上, 却結髻. ○丈夫・婦人斬衰者, 所以括髮及髽者.】頭纚【國俗婦人斂髮與中國異, 皆不爲髻, 而只交髮於頂上, 用段一條, 束其交髮盡處而垂之, 卽頭纚之遺制也.】竹簪【或用木爲之. ○婦人之用.】'"

51) 金長生,『沙溪全書』卷31 喪禮備要・小斂. "〈小斂之具〉'婦人髽亦細麻繩, 齊衰以下亦用布・絹, 皆如慘頭之制. (…) 括髮・免・髽至成服去之. [竹簪] 婦人安髽者, 母喪則榛木爲之.『儀節』長五六寸. 按, 古禮成服用之, 與『家禮』不同.'";『疑禮問解』卷36 小斂 "〈婦人髽斬衰以麻, 齊衰用布.〉問 : '婦人以麻繩撮髻云者, 指斬衰而言耶? 雖齊衰亦以麻繩耶?【黃宗海】' 答 : '婦人撮髻以麻, 指斬衰而言, 齊衰則以布也.「小記」說可考.'"

주장과 "제최부터 시마까지 모두 베로 좌를 한다."고 한 가공언의 주장에 대해서는 누가 옳은지 자세하지 않다고 기록하였다. 髽를 만드는 방법은 『서의』에 의거하여 이마에서 교차하고 髻를 두르도록 한 것은 고례와 같지만, 우리나라 풍속에 부인들은 평소에 髻를 만드는 일이 없어 髽의 예를 시행하기 어려우니 시속을 따라 머리카락을 거두는 것으로 규정하였다.[52] 이는 신의경과 마찬가지로 시속을 따른 것이다. 성복에는 『가례』를 따라 베로 만든 머리끈과 비녀를 언급하였으므로,[53] 경호는 소렴과 성복에 모두 髽의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性齋 許傳(1797-1886)의 『士儀』에서는 막 죽었을 때, 남녀가 冠과 비녀를 제거하여 머리카락이 흩어져도 거두지 않다가, 襲과 斂을 하고 나면 머리를 묶어 남자는 免을 하고 여자는 髽를 한다고 하였다. 즉, 남자는 免으로 冠을 대신하고, 부인은 髽로 비녀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는 소렴의 髽에 대나무나 나무로 만든 비녀를 사용한다고 규정한 『가례』 및 위에서 살펴본 조선학자들의 견해와 차이를 보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재는 「상복소기」 공영달의 소에 "삼년상 동안 부인은 베로 만든 髽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를 간략하게 하여 髽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54] 즉, 성재도 髽를 소렴에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성복에 베로 만든 머리끈과 비녀를 이용한 다른 머리 모양이 있다고 여겼으므로 삼년상 내내 髽를 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55] 이러한 입장은 『사의절요』에도 소렴에는 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도, 성복에는 베로 만든

52) 李宜朝, 『家禮增解』 卷6 喪禮2. "〈小斂〉 '髽亦用麻繩撮髻.【愚按, 「圖式」〈始死變服圖〉'斬衰婦人去笄而纚'條曰: '「問喪」註爲母同'云, 則「士喪」註'始死, 婦人將齊衰者, 骨笄而纚'云者, 是指期以下齊衰而言也. 若母喪齊衰, 則去笄而纚, 至小斂, 亦去纚而髽. 皆同斬衰, 而但當用布髽. 又按, 孔疏與崔氏說皆云: '婦人大功以下無髽', 賈疏則云: '自齊衰至緦, 皆布髽', 未詳孰是.[止] ○愚又按, 據『書儀』髽制之交額繞髻, 皆與古同, 而第東俗婦人不用髻制, 則髽禮亦難施之矣.[右東國婦人難用髽制】 婦人髽于別室.【吾東平日, 無婦人作髻之事. 只依俗斂髮而已.】'"

53) 李宜朝, 『家禮增解』 卷7 喪禮3. "〈成服〉 '布頭縗, (…) 竹釵【按, 卽箭笄也.】'"

54) 許傳, 『士儀』 卷6 易戚. "〈變服之具・髽麻布〉 '按, 禮殺而不髽. ○今考「小記」'男子冠而婦人笄, 男子免而婦人髽.' 謂男子冠而婦人笄者, 平時之禮也. 故喪時, 則男子以免代冠, 婦人以髽代笄也. 盖始死去冠笄, 髮散而未收, 故旣襲斂則括髮, 而加免與髽也.'"

55) 許傳, 『士儀』 卷6 易戚. "〈變服之具・竹釵〉 '竹釵 : 婦人安髮者. 母喪則榛木, 長尺. ○竹釵, 『儀禮』之箭笄, 成服用之.'"; "布頭縗 : (…) 喪服斬衰章 布總. (…) 『家禮』成服, 但曰布頭縗竹釵, 而更無他冠, 布則頭縗所以爲首飾."

머리끈[布頭纚]과 대나무비녀[竹笄]만을 기록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가례』는 소렴에만 髽를 언급하고, 성복에는 비녀와 머리끈만 기록하여 髽가 소렴부터 성복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성복에 비녀와 머리끈을 사용한 다른 머리 형태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사계는 『가례』를 준수하여 소렴에는 머리를 묶어 髽를 만들고 비녀를 꽂다가 성복에 髽를 제거하고 비녀와 머리끈으로 상례의 법도에 맞는 부인의 머리모양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후 조선의 학자들도 같다. 대표적인 『가례』 주석서를 토대로 본다면, 髽의 제도는 소렴에만 하거나 시속을 따라도 되는 정도의 의절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다산이 제시한 髽의 형태

1) 부인 상복의 원칙과 髽의 의미

조선후기의 유학자들은 『가례』를 준수하고 주소가들의 설명을 보충하여 髽를 소렴에만 하거나 시속을 따르게 하였다면, 다산은 남자가 括髮을 하고 免이나 喪冠을 쓸 때 冠이 없는 부인에게 하는 머리모양으로 생각하였다. 즉, 髽는 예를 구현하는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남자의 喪冠에 해당하는 핵심 구성 요소라는 것이다. 남자가 고례를 따라 喪冠을 마련하고자 한 것과 마찬가지로[56] 부인의 髽도 그에 걸맞는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복원에 힘썼던 것이다.

다산은 부인의 상복을 제정하는 원칙을 질박함을 중시하여 벗는 의절은 있지만 바꾸는 의절이 없고 소략하여 변화를 줄이며[57] 남자와 견주어 가벼움을 따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58] 그 원칙에 따라 고증을 진행한 대표적인 사례가 髽이다. 남자가 애통함이 극에 이르러 가장 흉한 모양인 括髮을 한다면 부인은 남자보다 가볍게 하고자 문식한다. 髽는 남자의 括髮과 같은 종류지만,

---

56) 이에 관해서는 차서연, 「상관의 형태에 대한 고찰—정약용의 『상례사전』 「상복상」을 중심으로—」, 『泰東古典硏究』 제43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9 참조.

57) 『禮記注疏』 卷33 喪服小記, 1147면. "'箭笄, 終喪三年.' 鄭注 : '有除無變.'"; 『禮記注疏』 卷33 喪服小記, 1113면 "'齊衰, 惡笄, 帶以終喪.' 鄭注 : '婦人質, 於喪所以自卷持者, 有除無變.'" 각주 58) 참조.

58)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 '鏞案, 婦人喪制, 皆視男子, 從輕.'"

括髮은 비녀와 머리끈이 없고 오직 삼으로 머리카락을 수습하므로 모양이 매우 흉하다. 髽는 대나무나 나무로 만든 비녀와 삼이 아닌 베로 만든 머리끈이 있어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문식을 더하는 것이 된다.[59] 반대로, 남자가 免이나 喪冠으로 바꿔쓰고, 졸곡에 가벼운 상복으로 갈아입는[受服] 시기에 부인은 남자보다 더 문식했던 비녀와 머리끈을 바꾸는 절차가 없다.[60] 즉, 남자가 문식할 때 부인은 남자보다 문식하지 않아 가볍게 한다는 의미이다.

髽의 형태에 대하여 다산은 髽라는 글자가 머리카락[髟]과 주저앉음[坐]으로 구성되므로,[61] 난쟁이[矬] 같거나 앉은[坐] 형태 또는 작은[小] 髻라고 주장하였다. 부인이 吉髻는 높고 크지만, 喪이 있으면 고쳐서 짧고 작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髽의 의미라고 분명하게 규정하였다.[62]

髽를 하는 상황은 다산이 상례 수행의 표준지침으로 제시한 『喪儀節要』[63]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남자와 여자는 옷을 갈아입는다.【冠과 겉옷[上服]을 벗고 화려한 장식을 제거하여 백색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남자라면 素色의 袍를 입고 없다면 素色의 氅衣를 입으며, 부인은 옅은 색 치마와 저고리를 입는데, 玉色으로 색이나 장식이 없는 것이다.]】 喪主를 세우고, 머리를 풀어 좌우로 늘어뜨린다. (…) 【(…) 남의 후사가 된 자식과 시집간 딸은 머리카락을 풀지 않는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위해서는 왼쪽 머리를 풀고,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오른쪽 머리를 푼다.[그 나머지인 처와 딸은 머리 전체를 푼다.] 머리를 푸는 방법은 髻를 풀어 가운데를 나누어 좌우로 늘어뜨리되 얼굴은 가리지 않는다.】[64]

---

59) 丁若鏞, 『喪禮四箋』 卷2 喪儀匡7. "〈葬2【請啓期・髽散帶・啓殯】〉 '鏞案, 髽, 與括髮類也. 但括髮無笄無總, 唯用麻繩括聚其髮而斂之, 其貌益凶. 髽則箭笄布總,【齊衰則榛笄】 不用麻繩, 其貌稍飾. 此其所異也.'"

60)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總二【齊衰總】〉 '又按, 布總升數, 旣視男冠, 則卒哭受冠之時, 宜亦有改, 但婦人質略少變, 未必改也.'"; "〈笄一【斬衰笄】〉 '鏞案, 明卒哭・小祥皆無變也.'"

61) 許愼, 『說文解字』 卷7上 髟部. "髽 : 喪結. 『禮』'女子髽・衰, 弔則不髽.' (…) 髽從髟坐."

62)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 '鏞案, 髽者, 矬髻也. (…) 鏞案, 髽者, 坐髻也. 婦人吉髻高廣, 有喪改之爲短小, 名之曰髽也.'"; "〈婦人絞帶【布帶】〉 '鏞案, 髽者, 小髻也.'"

63) 『상의절요』는 『의례』를 재배지[編次]한 『상례사전』의 의절을 준수하거나 개정 또는 폐기하면서 『가례』와 俗禮를 활용하여 일부 의절을 재구성하고, 규정을 준수하거나 활용하면서 절검과 가벼움, 속례를 따라 보완하고 수정하여 시의를 마련함으로써 수행가능성을 높인 다산의 저작이다. 장동우, 앞의 글, 2015, 326면 참조.

64) 丁若鏞, 『喪儀節要』 始卒. "男女改服.【去華采而已. 男子著素袍,[無者, 素氅衣.] 婦人著淺色襦裙.【卽玉色

堂 동쪽에 絰과 帶를 진설한다.【(…) 위로 斬衰로부터 아래로 緦麻에 이르기까지 소렴을 했다면, 모두 首絰・腰絰・絞帶・布帶를 한다. 머리를 묶어 免을 하고, 髽를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 역시 함께 진설해 놓아야 한다.】65)

부모가 막 사망하면, 冠과 겉옷[上服]을 벗고 화려한 장식을 제거하여 남자라면 素色의 袍를 입고 없다면 素色의 氅衣를 입으며, 부인은 玉色의 색과 장식이 없는 치마와 저고리를 입는다. 이때 처와 딸은 전체 머리를 풀어 반으로 나눈 다음 좌우로 늘어뜨리고,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위해 왼쪽 머리를,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오른쪽 머리를 푼다.66) 소렴에 풀었던 머리를 묶는데, 남자는 머리를 묶은[括髮] 다음 免을 쓰고, 부인은 髽를 한다. 다산도 『가례』를 따라 소렴이 끝난 뒤 곧바로 남자는 括髮을 하고 부인은 髽를 하도록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다산이 지적한 주소의 오류

茶山은 남자가 머리를 묶을 때 부인도 머리를 묶는 단순한 형태인 髽가 복잡해진 가장 큰 원인은 「상복소기」의 문장에서 남자의 冠과 부인의 비녀[笄], 남자의 免과 부인의 髽를 대비시키고자 한 주소가들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로 인해 髽에 비녀를 제거함[去笄]과 뼈로 만든 비녀[骨笄], 삼으로 만든 髽와 베로 만든 髽, 2종류의 髽와 3종류의 髽, 성복의 髽와 아직 성복을 하지 않았을 때의 髽 등 다양한 논의가 역대로 제시되면서 복잡해졌다.67) 다산은

無采飾者.】立喪主, 披髮, (…)【(…) 出後子・出嫁女不披髮. 婦爲舅披左髮, 爲姑披右髮.[其餘妻・子女全披.] 凡披髮之法, 解髻而中分之, 垂之於左右, 不蒙面也.】"

65) 丁若鏞, 『喪儀節要』 小斂. "陳絰帶于堂東.【旣小斂, 皆著首絰・腰絰・絞帶・布帶. 其括髮・免・髽之具, 亦宜同設.】"

66) 宋에서 아버지를 위한다면 왼쪽 머리를 풀고 어머니를 위한다면 오른쪽 머리를 풀고 시아버지를 위한다면 뒤의 왼쪽 머리를 풀고 시어머니를 위한다면 뒤의 오른쪽 머리를 풀었는데, 司馬溫公은 이 방법이 모두 예가 아니므로 전부 풀어야 한다고 하였다. 司馬光, 『書儀』 卷5 喪儀1 易服. "世俗多忌諱, 或爲父則被左髮, 母則披右髮, 舅則被後左, 姑則披後右, 皆非禮, 宜全被之." 그러나 다산은 머리를 풀고 양쪽으로 늘어뜨려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강조하였다.

67)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鏞案, 「小記」之文, 本來平正, 而注疏家看得太巧, 必欲逐節而對擧, 則曰'去笄'・'骨笄', 曰'麻髽'・'布髽', 曰有'二種'・'三種', 曰有'成服之髽'・'未成服之髽', 嘮嘮叨叨, 七藤八葛, 滓其病源, 悉由「小記」之文, 看得太巧也.'"

髽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髽의 제도를 복잡하게 만든 주소의 오류를 6가지로 구분하여 지적하였다.

첫 번째는 비녀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68] 이 경우 「상복소기」에 대한 주소의 해석처럼 남녀의 상복이 절목마다 대비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된다.

> 남자가 冠을 쓰고 여자가 비녀를 하는 것은 진실로 대비되는 것이지만, 남녀의 복식 제도는 본래부터 같지 않다. 남자가 삼을 사용할 때 여자도 삼을 사용해야 하고, 남자가 베를 사용할 때 여자도 베를 사용해야 하며, 남자가 幓頭와 같을 때 여자도 幓頭와 같아야 하고, 남자가 2종류가 있을 때 여자도 2종류가 있어야 하는가? 천하에 이런 법은 없다. 吉冠은 비단[絲帛]으로 하고 免冠은 성근 베를 사용하며, 吉笄는 상아와 옥으로 하고 髽笄는 쓰지 못할 나무로 하며, 免은 吉冠보다 작고 髽는 吉笄보다 작으며, 남자는 免으로 冠을 대신하며 부인은 髽로 髻를 대신하게 하더라도 그 예는 서로 대비되니 어찌 반드시 비녀를 제거해야 통쾌하겠는가?[69]

다산의 생각은 남자의 冠과 부인의 비녀는 대비되는 절목이지만, 남자와 부인의 상복이 시기와 소재, 종류와 착용 방법까지 모두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막 사망했을 때 정현은 부인에게 비녀를 제거하도록 함으로써 남자가 冠을 벗는 것과 교묘하게 대비시키고자 하였다. 남자는 冠을 제거해도 여전히 머리를 묶은[括髮] 형태인 幓頭가 있지만, 부인은 비녀를 제거하면 머리를 수습할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冠을 벗는 것과 비녀를 제거하는 것은 동일한 차원의 의절이 될 수 없다.[70] 그러므로 남자와 부인은 吉禮와 凶禮가 대비되면 될 뿐이지 반드시 남녀의 상복이 절목마다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산의 입장이다. 「상복」에 "참최는 가는 대나무 비녀[箭笄]를 꽂고 髽를 하며, 제최는 惡笄로 髽를 한다"라고 한 것과 「단궁」에 "남궁도의 처가 개암나무 비

68)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 '今考其法, 與註疏不合者六. 不去笄, 一也.'"
69)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 '男冠女笄, 固爲對待之物, 然男女服飾之制, 本自不同. 男用麻時, 女必用麻, 男用布時, 女必用布, 男如幓頭時, 女必如幓頭, 男有二種時, 女必有二種乎? 天下無此法也. 吉冠以絲帛, 免冠用疏布, 吉笄以象玉, 髽笄用惡木, 免小於吉冠, 髽小於吉髻, 男子以免而代冠, 婦人以髽而爲紒, 其禮正相對待, 何必去笄之爲快乎?'"
70)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 '鄭君之必欲去笄, 何也? 其意不過欲去婦人之笄, 以之巧對乎男子之去冠也. 然男子去冠, 猶有幓頭, 婦人去笄, 遂無榛箭, 其義不傾仄乎?'"

녀를 꽂고 髽를 했다"라고 한 것은 비녀를 제거하지 않는 증거이다. 즉, 髽를 하면 비녀를 해야 하고 비녀가 없으면 髽를 하지 못하니 髽를 함에 잠시라도 비녀를 제거할 수 없다.[71] 주소에서 "성복을 하기 전에는 髽를 하고 비녀를 하지 않는다"라고 잘못 풀이하였는데도, 주자가 비녀가 없으면 髽를 할 수 없음을 알고 소렴에 髽를 할 때 대나무나 나무로 비녀를 만들어 꽂도록 한 것에 대해 古禮의 바른 예와 합치된다고 다산은 높이 평가하였다.[72]

두 번째는 삼이나 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자가 삼으로 括髮을 하고 베로 免을 한다는 것은 충실하게 기록하면서도, 髽를 할 때 사용하는 소재에 대해서 三禮書에는 분명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공영달의 소에서 "성복한 다음 남자가 賓을 상대하며 免을 한다면 부인은 베로 만든 髽를 한다"고 하였다.[73] 이 말은 斬衰의 부인도 베로 만든 髽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참최는 삼으로 만든 髽이고 제최는 베로 만든 髽라는 자신의 설과 모순되며, 결국 髽의 소재가 두 가지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으니 髽는 베만 사용하는 것이다.[74]

세 번째는 慘頭와 같이 紒를 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산은 髽라는 글자가 머리카락[髟]을 따랐다고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삼이나 베를 구분하여 사용하지도 않고, 紒를 慘頭와 같이 두르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다.[75]

네 번째는 소렴과 성복의 髽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산은 「상복」에서 絰帶 등은 모두 소렴부터 착용하여 성복까지 이어지므로, 髽의 제도만 예외일 수 없다고 하였다. 고례에서 성복에 참최라면 대나무 비녀를 사용하

---

71)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 '據經, '斬衰者, 箭笄以髽, 齊衰者, 惡笄以髽',【「喪服」文】 '南宮縚之妻, 檜笄以髽'.【「檀弓」文】 髽則必笄, 無笄不髽, 此不去笄之明驗也. (…) 髽之爲物, 專靠於笄, 無笄不能髽矣, 其可須臾而去之乎?'"

72)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笄1【斬衰笄】〉 '又按, 注疏誤以爲'成服之前, 髽而不笄', 朱子察其謬, 知無笄則不成髽, 故小斂之髽, 便用竹木之簪, 眞合古禮之正矣.'"

73) 각주 32) 참조.

74)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 '不用麻若布, 二也. (…) 括髮以麻, 免而以布, 記之唯謹, 而髽之用物, 不現三禮. (…) ○又按, 疏說, 成服後, 男或對賓而免, 則婦人布髽, 若然, 斬衰婦人亦當具布髽矣. 其說之左右矛盾, 無一而中於理, 類如是矣. 髽法無二.'"

75)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 '不繞紒如慘頭, 三也. (…) 髽之爲字, 唯髟是從, 此不用麻若布, 不繞紒如慘頭之明驗也.'"

고 제최 이하는 나무 비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주자가 소렴에 원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사계는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다산은 髽가 絰帶처럼 소렴부터 성복까지 이어지므로 고례와 『가례』의 의미가 같다고 보았다. 또 남궁도의 처가 할 髽에 대하여 공자가 정성스럽게 가르친 이유도 한 가지뿐이므로 두 가지 종류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76] 다산은 정현의 의미도 "부인은 髽를 하고 상을 마치므로 비록 성복 이후라도 여전히 露紒를 바꾸지 않는 것"인데, 가공언이 정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렴과 성복의 髽를 다른 형태로 본 것을 지적하였다.[77]

다섯 번째는 대공 이하는 髽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髽는 처가 남편을 위해, 첩이 군을 위해, 부모나 시부모를 위해 한다. 「상복·기」에서 "妾이 女君과 君의 長子를 위해 布總을 한다."[78]라고 기록한 이유는 어머니가 長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는 경우에도 髽가 없기 때문이니 시마와 대공은 髽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79] 다산은 대공 이하도 髽를 한다고 주장한 가공언의 설을 비판하고 공영달의 설을 지지하였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奔喪」에 髽를 하는 부인에 대한 논의에서 공영달이 이미 "대공 이하는 髽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정현이 부인을 고모와 자매와 딸이라고 규정하여 髽를 한다고 한 내용을 감히 어길 수 없어 "기년 이하는 삼이나 베의 구분이 없다"고 수정 해석한 점은 수용하지 않았다.[80]

마지막으로 항상 하고 바꾸지 않는 것이어서 일시적으로 착용하는 免과 대비되는 절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士喪禮」와 「士虞禮」에는 대렴·성복·啓殯·下

76)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 '無二種, 四也. (…) 「喪服」所記絰帶之等, 皆用於小斂, 而成服因之, 何必髽制有二乎? 南宮縚之妻之髽, 夫子諄諄然誨之, 只有一法, 此小斂·成服無二種之明驗也.'"

77)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 '鄭意蓋云'斬衰婦人, 以髽終喪, 故雖在成服之後, 而猶不改露紒'也. 賈君未達鄭意, 胡亂如此.'"

78) 『儀禮注疏』 卷43 喪服·記, 750면. "妾爲女君·君之長子, 惡笄有首, 布總."

79)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 '凡髽之法, 唯妻爲夫, 妾爲君, 爲父母·舅姑有之, 其餘雖三年, 不髽, 故「喪服·記」: '妾爲女君及君之長子, 布總而無髽也.' (…) 無大功以下之髽, 五也. (…) 妻爲夫, 妾爲君, 爲父母·舅姑, 髽, 不然者, 雖三年不髽,【据「喪服」.】此緦·功不髽之明驗也.'"

80)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 '賈公彥謂 : '緦·功亦髽.' 讀禮之難如此.【母爲長子三年, 亦當無髽, 故齊衰三年章無此文.】(…) ○鏞案, 孔氏前旣云'大功無髽', 又於此不敢違鄭氏姑·姊妹之文, 釋之如此, 不亦謬乎?'"

棺・反哭・虞・卒哭 등에서 남자의 變除에 관해서는 상세히 기록하면서도, 부인의 髽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항상 髽를 하고 고치지 않아 免에 대비되는 절목이 아님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보았다.[81] 남자는 免을 쓰다 喪冠으로 바꾸고 졸곡에 가벼운 喪冠으로 다시 바꿔 쓰더라도 부인은 질박함을 중시하여 벗는 의절은 있지만 바꾸는 의절은 없는 것도 그 증거가 된다.

다산은 정현이 「상복소기」의 冠과 비녀, 免과 髽의 문장에 집착하여 남녀의 變除를 교묘하게 꿰어맞추려다 당당한 중국의 예제와 문물을 괴이하게 만들었다고 한탄하였다. 또 括髮과 免, 髽를 하나로 본 주소에 대해 括髮과 髽는 소재가 다르고, 髽는 髻의 모양이므로 髽를 하지 않으면 앉힐 髻가 없고, 免은 冠의 모양이므로 免을 하지 않으면 덮을 髻가 없어 3가지는 서로 다른 제도라고 결론지었다.[8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髽에 대한 학자별 견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髽의 시기별 구성 요소와 형태에 대한 학자별 견해

절차 / 학자	종류	小斂		成服	
		종류	형태	종류	형태
鄭玄	斬衰	麻髽 (笄・纚 없음)	大紒, 露紒	麻髽(布總+箭笄)	露紒, 帩頭
	齊衰	髽	-	布髽(布總+惡笄=櫛笄=榛笄)	-
賈公彦	斬衰	麻髽	帩頭	麻髽(布總+箭笄)	露紒
	齊衰	布髽	-	布髽(布總+榛笄)	露紒
	大功 以下	-	-	髽(布總+榛笄)	露紒

81)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 '恒著不改, 不視絞爲節, 六也. (…) 「士喪禮」・「士虞禮」, 凡大斂・成服・啓殯・下棺・反哭・虞・卒哭之等, 男子之變, 記之唯詳, 而婦人之髽, 遂不再見,【鄭以啓殯之丈夫髽爲互文, 非也. 詳見'箕七'.】 此恒髽不改, 不視免爲節之明驗也.'"

82)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 '括髮以麻而髽不用麻, 絞有冠象而髽有髻象, 三者之法, 逈然不同, 而注疏以來, 混而一之, 不亦謬乎? (…) 鄭公執「小記」免・髽之文, 欲使男女之變, 巧對爲匹, 左牽右纏, 七藤八葛, 而堂堂中國, 禮制文物, 乖詭不可問矣, 不可嗟乎? (…) ○鏞案, 不髽, 以無髻可坐也. 不免, 以無紒可覆也. 其義雖同, 而其制各殊矣. 括髮以麻而髽不用麻, 絞有冠象而髽有髻象, 三者之法, 逈然不同, 而注疏以來, 混而一之, 不亦謬乎?'"

孔穎達	斬衰	麻髽	露紒	麻髽(布總+箭笄)	露紒
	齊衰	布髽	露紒	布髽(布總+榛笄)	露紒
朱子	斬衰	髽(麻繩+竹簪)	髻	布頭纚+竹簪	髽 불분명
	齊衰	髽 (列布・絹+木簪)	髻	同上	髽 불분명
申義慶	斬衰	麻繩+竹・木簪	慘頭 *시속을 따름	頭纚+竹簪(箭竹)	髽 아님
	齊衰	布頭纚+竹・木簪	髽 아님 *시속을 따름	頭纚+木簪	髽 아님
金長生	斬衰	髽(麻繩)	慘頭 *성복에 제거	布頭纚+竹簪	髽 아님
	齊衰	髽(布・絹)	慘頭 *성복에 제거	布頭纚+木簪	髽 아님
李宜朝	斬衰	시속을 따라 머리카락을 거두리만 함	髽 아님	布頭纚+竹笄	髽 아님
	齊衰			布頭纚+木笄	髽 아님
許傳	斬衰	麻髽	慘頭	布頭纚+竹笄	髽 아님
	齊衰	布髽	-	布頭纚+木笄	髽 아님
丁若鏞	斬衰	布髽(布總+竹簪)			
	齊衰	布髽(布總+木簪)			

3) 다산이 생각한 髽의 형태

髽는 머리 모양으로, 주자는 髻와 髽에서는 慘頭의 설을 취하지 않고 오직 髻를 묶는 것을 방법으로 삼고, 免에서는 慘頭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다산은 주자가 주소의 오류를 밝게 깨우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83] 주자를 따라 髻를 묶어서 髽를 만들도록 하였다. 다만, 공자의 높고 크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준수하여 정현처럼 '大紒'가 아닌[84] 작고[小] 난쟁이[矬] 같으며 앉은[坐] 형태로 만들도록 제시하였다.

> 내가 생각건대, 髽는 앉은[坐] 髻이다. 부인의 吉髻는 높고 커서 우뚝 솟아있는데 상이 있으면 낮고 작게 고친다. 사람이 서 있다가 앉는 것 같으므로 髽라 이

83)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 '鏞案, 朱子於髻於髽, 不取慘頭之說, 唯以撮髻爲法. 於免, 則用慘頭之法, 注疏之謬, 朱子已照破矣.'"

84)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 '孔子則誨之勿令高大, 鄭必云大紒, 何也?'"

름하였다.【짧은 것을 矬라 하고, 꺾인 것을 挫라 하며, 반을 굽힌 것을 爰라 하니, 그 의미는 같다.】(…) 髽를 가로지른 것이 비녀[笄]이다. 비녀의 길이가 1척이라면 髽의 너비는 너무 넓지 않게 된다.【髽의 너비는 8촌 남짓이어야 한다.】 髽에 드리우는 것이 머리끈[總]이다. (제최) 머리끈의 길이가 8촌이라면 髽의 높이는 너무 높지 않게 된다.【髽의 높이는 6촌 남짓이어야 한다.】 吉笄의 길이는 1척 2촌이고【「喪服傳」이다.】 지금 비녀가 1척이라면 髽의 너비는 髻보다 줄어든다. 길례의 머리끈[總] 길이는 1척 2촌이고【正文에는 없고, 가공언의 소에 "1척 2촌이다"라 하였다.】 지금 머리끈이 8촌이라면 髽의 높이는 髻보다 줄어든다.【제최의 머리끈은 8승의 베를 사용하는데 가공언의 소에 나온다.】(…) 髽는 오로지 비녀[笄]와 머리끈[總]에 의지하여 비녀로 단단하게 하고 머리끈으로 묶으니【髻를 묶고 그 나머지를 늘어뜨려 장식으로 삼는다면 8촌은 그 나머지에 근거하여 말한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髽를 할 수 없다.[85]

茶山이 생각한 髽는 길례보다 높이와 크기가 작아 앉은 형태로, 제최라면 둘레가 8촌이고, 높이는 6촌 남짓이다. 1촌 너비의 머리끈[總]으로[86] 묶어 髻의 모양을 만든 다음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1척 길이의 비녀를 꽂는다.[87] 머리를 묶은 끈의 나머지는 장식으로 삼아 양쪽으로 늘어뜨리는데[88] 그 길이는 8촌으로 한다.[89] 斬衰라면 더욱 낮고 작게 만들면 된다.

---

85)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 '鏞案, 髽者, 坐髻也. 婦人吉髻, 高大竦立, 有喪, 改之爲卑小, 若人自立而爲坐, 故名之爲髽也.【短曰矬, 摧曰挫, 半拜曰爰, 其義一也.】(…) 橫於髽者, 笄也. 笄之長一尺, 則髽之廣不至於扈扈也.【髽之廣當爲八寸許.】 垂於髽者, 總也. 總之長八寸, 則髽之高不至於從從也.【髽之高當爲六寸許.】 吉笄之長, 尺二寸,【「喪服傳」】 而今笄一尺, 則髽之廣減於髻矣. 吉總之長, 尺二寸,【無正文, 賈疏云 : '尺二寸.'】 而今總八寸, 則髽之崇減於髻矣.【齊衰之總, 用八升布, 出賈疏.】(…) 髽之爲物, 專靠笄總, 笄以羣之, 總以束之,【束髻而垂其餘以爲飾, 則八寸者據其餘者言.】 非是不能髽也.'"

86)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總1【斬衰總】〉 '其廣無文, 宜廣一寸, 與絞同也.【吉總, 則不止一寸.】'"

87) 비녀의 길이는 五服이 모두 1척으로 같고, 吉笄는 1척 2촌이다. 『儀禮注疏』 卷29 喪服・傳, 646-647면. "〈斬衰三年章〉 '箭笄長尺, 吉笄尺二寸.' 賈疏 : '「檀弓」 '南宮縚之妻爲姑, 榛以爲笄, 亦云一尺.' 則大功以下, 不得更容差降.'"; 『禮記注疏』 卷6 檀弓上, 221-222면. "蓋榛以爲笄, 長尺."

88)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總1【斬衰總】〉 '鏞案, 東俗總必雙垂,【俗名曰唐紒】 須用尺二寸, 中屈之, 可垂六寸.'"

89) 斬衰의 머리끈은 6승의 베로 만들며, 묶고 늘어뜨린 길이가 6촌이다. 6승은 斬衰冠의 승수로, 부인의 머리 장식이므로 冠의 승수를 본떴다. 齊衰의 머리끈은 8승의 베로 만들며, 묶고 늘어뜨린 길이가 8촌이다. 대공 이하는 齊衰와 같은 8촌이고 緦麻와 小功의 머리끈[布總] 길이는 1척이다. 吉禮의 머리끈[總]은 1척 2촌으로 비녀와 크기가 같다. 『儀禮注疏』 卷29 喪服・傳, 646-647면. "〈斬衰三年章〉 '總六升, 長六寸.' 鄭注 : '總六升者, 首飾象冠數. 長六寸, 謂出紒後所垂爲飾也.' 賈疏 : '鄭知者, 若據其束本, 入所不見, 何寸數之有乎? 故鄭以六寸據垂之者, 此斬衰六寸. 南宮縚妻爲姑總八寸, 以下雖無文,

髽는 髻로, 높고 큰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낮고 작은 것을 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옛날 가요에 "궁중에서는 높은 髻를 좋아하여 사방의 높이가 1척이라네"라고 하였다. 즉, 吉髻는 높고 크지만, 喪髻인 髽는 낮고 작게 만드는 것이다. 공자가 경계한 것도 吉髻의 높고 큰 형태처럼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 제최의 髽는 작고 낮더라도 斬衰의 髽는 크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머리모양인 髻는 尺寸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높이와 너비를 비녀와 머리끈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비녀와 머리끈의 치수만 알려주고, 너무 높고 너무 크게 하지 말라고 강조한 것이다.[90]

髽의 제도는 이와 같을 뿐으로, 마융이 4촌 높이의 巾이라고 한 것에 대해 다산은 평상시 부인에게 冠이 없으므로 巾을 만들어 착용하자고 하는 것은 오류임을 지적하였다. 정중과 두예가 삼과 머리카락을 반씩 섞어 묶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의 상복은 남자보다 가볍게 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자도 하지 않는 것을 부인이 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였다. 정현이 머리싸개를 제거하고 大紒로 만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만약 머리싸개를 제거하고 본래 하던 紒를 한다면 『좌전』에 "노나라는 이로부터 髽가 있게 되었다"라는 문장과 어긋나게 된다고 반박하였다.[91] 부인에게는 冠이나 巾의 쓰개가 없고, 남자도 하지 않는 것을 부인이 할 수 없으며, 노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부인의 머리 모양이 바로 髽로, 너무 높고 크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다산의 결론이다.

髽의 형태를 고찰한 다산은 『상의절요』에서 髽를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大功總當與齊同八寸, 緦·小功同一尺. 吉總當尺二寸, 與笄同也.'"

90)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毋從從·毋扈扈, 禁之勿如吉髻之高廣也. 髻之爲物, 不可以尺寸劑量之, 其崇卑·廣狹, 只可以笄總推驗之, 故記之者, 繼言笄總之尺寸, 以畢其毋從從·毋扈扈之義也. (…) 髽也者, 髻也.【鄭亦云:'露髻'】髻以高大爲美, 卑小爲惡, 故古諺曰, '宮中好高髻, 四方高一尺.' 孔子之戒, 戒與吉同也, 非謂斬衰之髽乃可大也.'"

91) 丁若鏞, 『喪禮四箋』 卷9 喪服商4. "〈髽〉'鏞案, 婦人喪制, 皆視男子從輕. 麻·髮合結, 男子之所不爲也, 則鄭·杜之義, 非也. 婦人平居無冠, 今爲四寸之巾, 著之額上, 何也? 季長之說, 非也. 去纚而紒, 則不應云'魯於是乎有髽', 康成之說, 亦未備也.'"

> 髽는 앉은[坐] 髻로 난쟁이[矬] 髻라고도 한다. 그 방법은 비녀[笄]가 있고 머리끈[總]이 있는 부인의 복식이다. 지금은 假髮을 줄이거나 제거하고【그 반을 줄인다.】 평소처럼 높고 크게 하지 않는다.92)

조선 후기의 부녀들은 국가 차원에서 금지령을 내려도 가발을 사용하여 머리를 풍성하게 장식하였다.93) 다산은 당시 조선에서 국가적으로 금지한 가발을 허용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髽의 크기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髻는 사람의 머리숱과 직결되어 있어 머리숱이 적은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규격을 맞추기 위해 가발을 사용하게 된다. 두 번째는 상례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당시 부인들은 가발을 사용하지 말라는 국가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발을 사용하여 머리 모양을 크게 만들었다. 하루아침에 꾸밈을 줄이라고 한다면 부인들은 상례에 대한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산은 가발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고 반으로 줄이거나 제거하여 단지 높고 크게 만들지 말라고 권고한 것이다. 다산이 생각하는 髽는 括髮과 같은 형태이지만 베끈으로 묶고 비녀를 더해 남자보다 문식한 髻로 明과 조선의 髻 형태를 참조하고 「喪服商」에서 제시한 치수를 대입하면 〈그림 7〉과 같은 형태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림 4〉 고구려 덕흥리 고분벽화의 髻.94)



〈그림 5〉 고려 朴翊墓의 시녀의 髻.95)



〈그림 6〉 조선 「宣祖朝耆英會圖」의 髻.96)

92) 丁若鏞, 『喪儀節要』 小斂. "髽者, 坐髻也, 亦矬髻也. 其法有笄有總, 婦人之服也. 今宜減去假髮,【減其半.】不高大如平日而已."
93) 김문식, 「18세기 서울 여성의 머리장식」, 『문헌과 해석』 제42집, 태학사, 2006, 38-50면.
94) 전호태,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풀빛, 1999, 172면, 214면.
95) 이민주, 『조선왕실의 미용과 치장』, 세창출판사, 2019, 55면.
96) 같은 책, 5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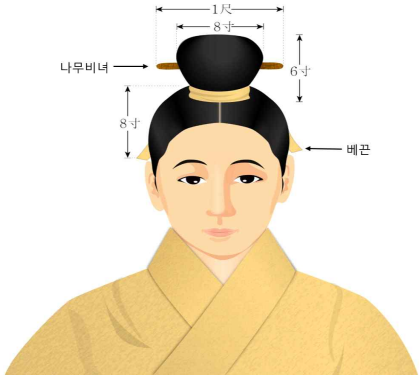

〈그림 7〉 다산이 제시하는 齊衰 髽의 크기와 형태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상례사전』「상복상」을 중심으로 부인이 상례에서 하는 首飾인 髽에 대한 다산의 해석을 고찰하였다. 조선의 상례는 『가례』를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고례의 주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다산은 『가례』의 규정을 존숭하면서 고례인 『의례』와 주소에 대한 비판적 고증을 통해 다산은 髽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소렴은 죽음을 인정하여 시신을 감싸는 단계로, 이때 처와 첩과 자식은 풀었던 머리를 묶고 상복을 입을 준비를 한다. 남자라면 括髮을 하고, 부인은 髽를 한다. 조선후기의 유학자들은 髽를 소렴에만 하거나 시속으로 대체해도 되는 의절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다산에게 髽는 남자의 喪冠에 비견되는 위상을 가진 것이므로 髽의 고증과 복원에 힘썼다.

다산은 남자와 견주되 가벼움을 따르는 것이 부인의 상복을 제정하는 원칙이라고 천명한다. 남자는 오직 삼으로 머리를 묶는다면[括髮], 부인은 남자보다 가볍게 해야 하므로 비녀와 머리끈을 사용하여 조금 더 문식한 머리모양을 만든다. 즉, 髽는 삼이 아닌 베로 머리를 묶어 髻를 만들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비녀를 꽂는 형태로 남자보다 조금 더 장식할 뿐이다. 그러므로 비녀가 없이 髽를 할 수 없고 慘頭와 같은 형태도 아니며 머리를 풀었던 처와

딸과 며느리만 하므로 대공 이하는 髽가 없다. 남자는 소렴에 머리를 묶고 免을 썼다가 성복에 喪冠으로 바꾸더라도 부인은 소렴부터 한 髽를 하고 바꾸지 않고 상을 마치게 된다. 즉, 부인의 髽는 소렴부터 상을 마칠 때까지 冠이 없는 부인의 머리모양으로 남자의 喪冠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髽는 머리카락[髟]과 주저앉음[坐]으로 구성된 글자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 난쟁이[矬] 같거나 앉은 모양[坐], 또는 작은[小] 형태의 髻라고 다산은 주장하였다. 부인이 吉髻는 높고 크지만, 喪이 있으면 고쳐서 짧고 작게 만드는 髻가 바로 髽이다. 크기는 제최라면 둘레는 8촌이고 높이는 6촌 남짓이며, 참최는 제최보다 낮고 작게 만들면 된다. 제최의 髽를 만드는 방법은 1촌 너비의 베로 만든 머리끈[布總]으로 묶어 髻의 모양을 만들고, 묶은 끈의 나머지는 8촌씩 양쪽으로 늘어뜨린다. 髻를 고정하기 위해 1척 길이의 비녀를 꽂는다.

다산이 부인의 喪禮 首飾인 髽의 구체적 치수까지 포함한 제도를 밝힌 이유는 남자가 상례에 喪冠을 쓰지 않을 수 없듯 冠이 없는 부인이 상례에 髽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髽의 복원에 힘쓴 표면적 이유는 부인이 상례의 법도에 맞는 수식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부인도 상례의 주체적인 수행자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음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고례의 髽에 대한 고증을 근거로 머리를 크게 장식하는 것을 멋으로 여기던 조선의 부인들에게 상례의 법도에 맞는 머리모양을 하고 의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荀子』, 『春秋左傳注疏』.

『大學・中庸』, 학민문화사, 1990.
『禮記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0.
『儀禮注疏』, 北京大學出版社, 2000.
『朱子家禮』, 학민문화사, 2001.
金長生, 『沙溪全書』.
司馬光, 『書義』.
徐 鉉, 『說文解字』.
申義慶, 『喪禮通載』.
李宜朝, 『家禮增解』.
丁若鏞, 『喪禮四箋』.
_____, 『喪儀節要』.
許 傳, 『士儀』.

김문식, 「18세기 서울 여성의 머리장식」, 『문헌과 해석』 제42집, 태학사, 2006, 37-52면.
劉權鐘, 「茶山 禮學 硏究—喪儀說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1.
유금와당박물관, 『도용: 매혹의 자태와 비색의 아름다움』, 유금와당박물관, 2009.
유금와당박물관・동양복식연구회, 『아름다운 여인들』, 미술문화, 2016.
이민주, 『조선왕실의 미용과 치장』, 세창출판사, 2019.
장동우, 「朱子 禮學에서 『朱子家禮』의 位相과 企劃 意圖」, 『정신문화연구』 제23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3-16면.
_____, 「『家禮』 註釋書를 통해 본 朝鮮 禮學의 進退過程」, 『東洋哲學』 제34집, 韓國東洋哲學會, 2010a, 240-269면
_____, 「『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과정」, 『국학연구』 제16집, 한국국학진흥원, 2010b, 183-206면.
_____, 「茶山 『喪儀節要』의 淵源과 再成文化의 原則」, 『韓國實學硏究』 제30집, 韓國實學學會, 2015, 325-380면.
전호태,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풀빛, 1999.
차서연, 「상관의 형태에 대한 고찰—정약용의 『상례사전』 「상복상」을 중심으로—」, 『泰東古典硏究』 제43집,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2019, 123-150면.
홍나영・신혜성・이은진, 『동아시아 복식의 역사』, ㈜교문사, 2011.

高春明, 『中國服飾』,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2.
中國織繡服飾全集編纂委員會, 『中國織繡服飾全集 3』, 天津人民美術出版社,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Shapes of Jwa (髽) Focused on Sangboksang (喪服商)

Cha, Seo-Yeon*

This paper aims to consider Dasan's interpretation of Gwa (髽), hair accessory [首飾] that a women wears in funeral rites and express it in pictures. Dasan regards Gwa as element corresponding to men's Sanggwan (喪冠). Like the man cannot help but use Sanggwan (喪冠), Women can not help but wear Gwa. So this paper considered 'Yili' (儀禮) and Family rituals (家禮) in detail for historical investigation and restoration of Gwa.

Dasan clarified that the principle of deciding women's mourning dress is following lightness compared to man. This is why compared to the men who does Gwalbal (括髮) only with the hair strap made with hemp, women wears Gwa (髽) with the hair strap made with hemp cloth and Binyeo (笄). Wife uses hemp cloth that is less rough than hemp and Binyeo that is not for men, in order to follow more rhetorical embellishment and lightness.

Dasan respected and worshipped the rules of Family rituals and presented the type of Gwa through critical research on Yili and comment. The Chinese character jwa (髽) consisted of hair (髟) and sitting (坐), it meant small topknot (小髻), dwarf topknot (矬髻), or sitting topknot (坐髻). She made Gwa with hair strap made with hemp cloth [布總] and to fix it firmly, sticked a Binyeo in her hair. The historical evidence proved that in case of Jechoi (齊衰), the circumference of Gwa is 8 chon and the height of it 6 chon or so and in case of Chamchoi (斬衰), it should be made lower and smaller than Jechoi (齊衰).

Dasan was the only person who revealed the system including the specific dimensions through strict historical investigation on Gwa, women's hair accessory in funeral rit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hair accessory that the women wore in funeral rites according to the customs. It also implies that the women came to have status as principal agent in funeral rites.

* Doctor course Completion, Dept. of Traditional Costume, Dankook Univ.

Keywords: Jwa (髽), Sangbok (喪服), Sangrae (喪禮), Sangraesajeon (喪禮四箋), Family rituals (家禮), Yili (儀禮).

접수일: 2019.12.30. ‖ 심사일: 2020.01.13. ‖ 게재확정일: 2020.02.07.